

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039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일자 : 2019. 12. 18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이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를 「주거기본법」 제20조에 따른 실태조사'로 직접 명시함으로써 해당 법령의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이 조례에 의한 실태조사가 「주거기본법」 제20조에 의한 것으로 그 근거를 추가함(안 제4조).

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은”을 “시장은 「주거기본법」 제20조에 의하여”로 하고,

안 제4조의2는 삭제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은”을 “시장은 「주거기본법」 제20조에 의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<p>제4조(실태조사의 실시) ① <u>시장은</u>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4조(실태조사의 실시) ① <u>시장은 「주거기본법」 제20조에 의하여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